

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237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(설립인가) 및 동법 시행령 제8조(설립인가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3. 10. 21.

중소기업청장

가. 인가번호 : 제310호

나. 조 합 명 : 한국인터넷게임방운영업협동조합

다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79-3

라. 대 표 자 : 김 찬 근

마. 인 가 일 : 2013. 10. 16.

바. 업무구역 : 전국

사. 설립업종 :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(한국표준산업분류 91222)